

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(신규)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 1952호
- 다. 제출일자 : 2024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6. 3.

2. 제안이유

- 가. 「도로사업소 테니스장」은 당초 직원들이 이용하던 테니스장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테니스 운동을 생활체육으로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나. 테니스장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항상 경기에 적합한 최상의 코트 관리와 초심자 테니스 강습프로그램 운영 등 테니스장 관리·운영 사무 전반에 대한 민간의 숙련된 경험과 전문적 관리 능력·기술 등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
- 다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위탁사업 :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·운영
- 위탁대상 : 동부·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(총 4면)
- 위탁방식 : 자립형 민간위탁
- 위탁기간 : 2024.8.1.~2027.7.31.(3년)
- 수탁기관 선정 방법 : 공개모집
- '25년 소요예산(안) : 운영비 지원 없음(자립형으로 이용료 수익금 등으로 운영)

나. '24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(권고)

〈 권고내용 〉

1. 시설이용이 특정인·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관리 철저
2. 유사시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 산정 및 수탁기관의 과도한 수익 추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

다. 위탁내용

- 테니스장 이용자 예약관리 및 이용료 징수 등 이용자 관리
- 수준별 강습 프로그램 운영
- 코트, 대기실, 조명시설 등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(점검·정비 등)
- 테니스장 이용 관련 민원처리
-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 등

라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
-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테니스장 이용 서비스 제공은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촉진하는 것임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,
-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테니스장 이용자 관리부터 시설정비, 강습 프로그램 운영 등 테니스장 관리·운영의 전문성 및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

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

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

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·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
- 1의2.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
2.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
3.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지원
4.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내·외 교류 지원
5. 자치구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지원
6.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
7.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
8.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관내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
9.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
10. 그 밖의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 시민들의 테니스 운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(이하 ‘민간위탁 조례’)」 제4조의3¹⁾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■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현황

-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은 재난안전관리실 산하 도로사업소가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성하여 운영중인 체육시설²⁾로서 이를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지난 3월 테니스장의 관리·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」로 제정³⁾한 바 있음.

-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2) 6개 도로사업소(동부, 서부, 남부, 북부, 성동, 강서) 중 테니스장 보유 사업소: 동부, 남부, 강서 도로사업소 (3개소)
- 3) 「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」 서울특별시조례 제9135호, 2024.3.15. 제정

- 후속 조치로 시는 동부와 남부도로사업소에 위치한 테니스장을 개방⁴⁾하고자 코트·조명·편의시설 등을 정비('24.5.~7.)하고 있으며 테니스장 운영은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운영자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함.

[표] 동부·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개요

구 분	동부도로사업소	남부도로사업소
면 적	1,300㎡	900㎡
보유면수	2면	2면
코트형태	인조잔디	인조잔디
조명시설	4개	2개
편의시설	대기실 1개, 화장실 1개	대기실 1개, 화장실 1개
현장사진		

※ 코트·조명·편의시설 등은 일반개방 전까지 별도 정비 시행('24.5.~ 7.)

- 이에 주관부서인 도로관리과는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⁵⁾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 예산지원이 없는 '자립형 민간위탁⁶⁾'을 3년(2024.8.1.~2027.7.31.)간 추진하겠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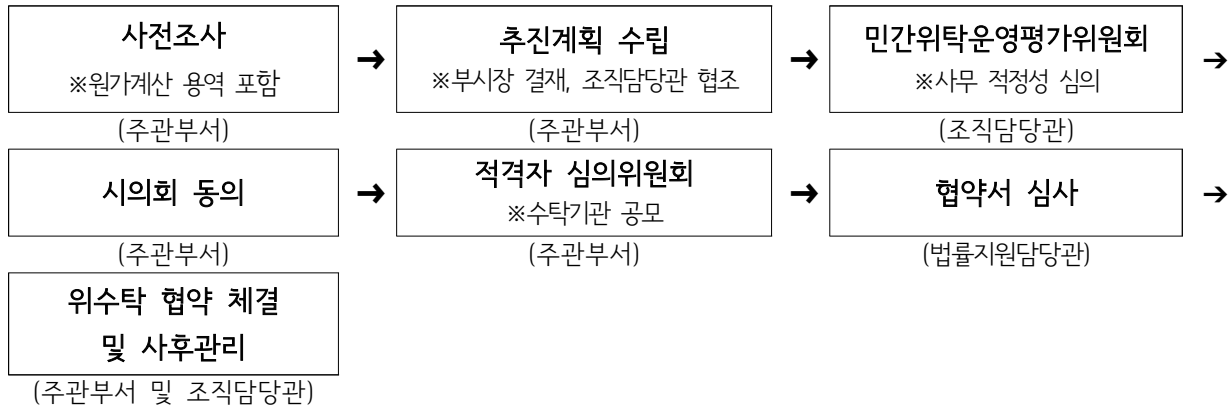
4) 당초 강서도로사업소 테니스장도 개방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와 무상사용 협약을 맺고 사용중인 국유지에 위치해 있어 테니스장 이용료 부과가 불가함에 따라 개방여부는 추후 협의 후 결정할 예정임.

5) '동부·남부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원가분석' 사단법인 한국경영분석원 (24.5월)
*민간위탁 계획 수립 시 수입·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.

6) 자립형 민간위탁: 시의 예산지원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,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·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.

는 계획을 수립(행정2부시장 방침 제128호, 2024.5.22.)⁷⁾하였으며,

- 지난 5월 29일 개최된 ‘24년 제4차 ‘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’에서 사무 적정성 심의 결과 ‘적정(권고)⁸⁾’으로 의결되어 금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

[그림] 신규 민간위탁(자립형) 공모 절차

■ 민간위탁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

-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체력 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운영자에게 테니스장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16조⁹⁾에 그 근거를 두

7) ‘테니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계획’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8호 (2024.5.22.)

8) ’24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(권고)

〈 권고내용 〉

1. 시설이용이 특정인·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관리 철저
2. 유사시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 산정 및 수탁기관의 과도한 수익추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

9)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·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고 있음.

- 이에 민간위탁 적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,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운영은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가 아니고, 민간위탁 조례 제6조¹⁰⁾의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 중 ‘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’에 해당하며,
- 테니스 코트 관리 및 양질의 강습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테니스장 관리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¹¹⁾의 규정을 충족함에 따라 민간 위탁방식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음으로, 운영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면([표] 참조), 직영 운영방식은

-
- 1.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
 - 1의2.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
 - 2.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
 - 3.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지원
 - 4.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내·외 교류 지원
 - 5. 자치구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지원
 - 6.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
 - 7.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
 - 8.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관내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
 - 9.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
 - 10. 그 밖의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10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~ 2. (생략)
- 3. 문화·체육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4. ~ 9. (생략)

1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- 1. ~ 2. (생략)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4. (생략)

테니스장의 직접 관리로 투명하게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수 있고 테니스장 이용료 세외수입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,

[표]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운영방식에 따른 비교

구 분	직영 운영	민간위탁 운영
운 영 자	서울시(도로사업소)	민간 수탁자
장점	• <u>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운영</u> 가능 • 테니스장 이용료 <u>세외수입 발생</u>	• 자립형 운영임에 따라 <u>시설관리 인력 및 시설정비 등 예산 절감</u> • 테니스강습 등 <u>다양한 프로그램</u> 운영으로 <u>시민 체육활동 촉진</u> • 테니스 코트 등 <u>전문적 시설관리로 서비스 품질 제고</u> • 관리·운영에 따른 기타 부대업무로 인한 행정소모 방지
단점	• 전담 관리 <u>공무원 증원</u> 필요 • 시설관리인력 등 <u>직접 고용</u>으로 퇴직급여 등 <u>고정비용 증가</u> • 시설정비 등 <u>지속적 예산투입</u> 필요 • 테니스강습 등 <u>전문적 운영에 한계</u>	• <u>과도한 수익성 중심 운영</u>으로 공익성 훼손 우려

- 테니스장 운영 및 강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쉽지 않으며,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 부재로 신규직원 채용 및 시설관리인력 고용 등 조직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.
- 반면에, 민간위탁 방식의 경우 자립형 운영으로 인력 채용 등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고 위탁운영자의 전문적인 운영관리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칫 과도한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익성을 훼손할 소지가

있는바,

-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테니스장 운영은 전문적으로 관리·운영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되 과도한 수익성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회계감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사료됨.
- 다음으로,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테니스장 세부 운영계획(안)과 원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운영인력은 총 4명으로 동부와 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에 각각 테니스 강사 1명과 시설관리 1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연간 총 운영사업비 3억 32백만원 대비 80%인 2억 65백만원이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,
- 시설관리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테니스장 환경정비와 경미한 시설정비 사무를 담당할 계획인바, 업무량 및 근무강도 대비 소요경비를 고려한다면 상시근로가 아닌 단시간근로형태¹²⁾나 시설관리자 1명이 2개소 테니스장을 모두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여겨짐.
- 이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사업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운영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 테니스장 이용료를 최대한 낮추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.

12)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9호

9. “단시간근로자”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.

□ 테니스장 운영계획(안)

○ 운영인력 및 사무

구 분	사무내용	비 고
테니스 강사(2명)	• 수준별 테니스 강습 프로그램 운영	동부 1명 / 남부 1명
시설관리(2명)	• 테니스장 쓰레기 수거 등 실시간 환경정비 및 경미한 시설정비 등	동부 1명 / 남부 1명

○ 세부 운영내용

구 분		운영내용
이 용 료		○ 1면, 1시간 기준 2만원 ※ 공휴일·토요일·야간(평일만 해당) 이용료는 100분의 30 가산
강 습 비		○ 시장가격의 통상적 범위 내에서 결정 ※ 강습비용은 위수탁 협약 체결 시 확정
운영개요		○ 이 용 대 상 : 서울시민 ○ 테니스장 면수 : 총 4면(동부 2, 남부 2) ○ 정규 이용시간 : 09시 ~ 22시 ○ 이용가능 시간·횟수 : (일 최대) 2시간 / 1회
(동부) 운영 시간	1 코트	○ 일반 예약자 - 09시 ~ 22시 ※ 주말(토·일) 중 1일 오전(09시~13시) 또는 오후(13시~17시) 시간대에는 종전 이용자 ('23.3.9. 인근 주민대상 명단 확정) 및 사업소 직원 우선 고려
	2 코트	○ 강습 수강생 - 09시 ~ 13시 / 17시 ~ 22시 ※ 잔여시간 일반 예약자 이용
(남부) 운영 시간	1 코트	○ 일반 예약자 - 09시 ~ 22시 ※ 주말(토·일) 중 1일 오전(09시~13시) 또는 오후(13시~17시) 시간대 사업소 직원 우선 고려
	2 코트	○ 강습 수강생 - 09시 ~ 13시 / 17시 ~ 22시 ※ 잔여시간 일반 예약자 이용

[표]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

구분	예산과목	연간(안)	구성비율	세부내역(천원)		비고
수입 계획	계	357,487	100%			
	위탁금	-				
	보조금	-				
	사업수입	357,487	100%	시설이용료	146,287	(40.9%)
				강습료	211,200	(59.1%)
	사업외수입	-				
지출 계획	계	331,701	100%			
	인건비	264,915	79.9%	기본급	57,363	- 시설관리: 2,390,124원×2명×12
				제수당	26,431	- 시설관리: 1,101,287원×2명×12
				퇴직충당금	7,381	- 시설관리: 기본급+제수당+상여금
				상여금	4,780	- 시설관리: 기본급의 100% 적용
				강사비	168,960	- 테니스강사 : 강습료×80% 적용
	경상경비	35,916	10.8%	복리후생비	7,081	- 인건비×7.38%
				수도광열비	9,970	- 인건비×10.39%
				세금과공 과금	8,214	- 인건비×8.56%
				보험료	1,583	- 인건비×1.65%
				수리수선비	7,830	- 인건비×8.16%
				운반비	1,238	- 인건비×1.29%
	공과금	9,315	2.8%			인적보험료: (인건비+퇴직충당금)×배부율
	예비비	-				
	지난년도지출	-				
	반환금	-				
	일반관리비	6,203	1.9%			
	이윤	15,352	4.6%			

- 한편, 테니스장 이용료는 1면, 1시간 기준 2만원(공휴일·토요일, 평일야간 이용료는 30% 가산)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「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·운영 조례」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니스장 이용료의 상한선에 해당함.

[별표]			
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이용료(제5조 관련)			
종 별	사용기준	금 액(원)	비 고
테니스장	1면당, 2시간당	10,000 ~ 40,000	○ 토요일·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. ○ 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요일·공휴일 제외)
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내 주요 테니스장 이용료 현황을 살펴보면 ((표) 참조), 서울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의 이용료는 평일 1면 기준 시간당 최대 1만원이었으며 민간 테니스장 이용료는 평일 1면 기준 시간당 평균 22,500원이었음.
-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의 이용료는 테니스장 이용자의 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용료를 책정하도록 조례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개방 초기부터 조례 규정 상한금액을 이용료로 산정한 것은 서울시 운영 타 테니스장과 비교할 때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,
- 동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의 경우 기존 테니스장 이용 지역주민들

에게 시민개방 이전과 동일하게 주말 주간 시간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된 만큼 신규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이용료 부담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느바 적절한 이용료 재산정이 요구된다 하겠음.

□ 서울시 내 주요 테니스장 이용료 현황

	구 분	시간당 이용료
서울시 운영 테니스장	인재개발원 (직영, 4면)	평일, 주말 10,000원
	난지물재생센터 (직영, 4면)	무 료
	장충테니스장 (위탁, 9면)	평일 4,000원
	한강공원 (위탁, 32면)	평일 4,000원
민간 테니스장	(강남구) OO테니스	평일 25,000원 / 주말 40,000원
	(송파구) OO테니스 클럽	평일 27,500원 / 주말 33,000원
	(동작구) O테니스	평일 20,000원 / 주말 30,000원
	(구로구) OOOO OO테니스	평일 15,000원 / 주말 25,000원
	(중랑구) OOOO테니스	평일 25,000원 / 주말 35,000원

- 한편, 동부와 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은 각각 2면의 코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개의 코트를 주요 시간(09시~13시/17시~22시)에 강습용으로 사용할 계획인데
-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원가분석 상 예상 수입액

에서 예상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이 사업수익으로 계상되는 상황에서 운영자가 무리하게 수입을 추구하거나 수익 보전을 위해 과도하게 강습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위탁 협약체결 시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할 것이며

- 수익을 위해 강습생 위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의 테니스장 사용이 어려워지는 만큼 일반 사용자들의 이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를 서울시가 상시 감독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■ 종합의견

-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의 시민개방 취지가 시민들에게 테니스 운동을 생활체육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민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테니스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양질의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민간위탁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.
- 다만,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권고하였듯이 시설이용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,
-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과도한 수익추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료 및 강습비 산정과 관련하여 테니스장 운영계획(안)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비용책정을 위

해 수탁업체의 경쟁 유도과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,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 이익은 환수도록 해야 할 것임.